



김해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463호 2020. 05. 15(금)

선	관 의 장
람	

조 례

제1503호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26746
제1504호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6747
제1505호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49
제1506호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50
제1507호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51
제1508호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52
제1509호	김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54
제1510호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26755
제1511호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26756
제1512호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26757
제1513호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26758
제1514호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60
제1515호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61
제1516호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6762
제1517호	김해시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6764
제1518호	김해시 호스피스(가운데집)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6765
제1519호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26767
제1520호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68
제1521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69
제1522호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70
제1523호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6771

회									
람									

발행 : 김해 시 편집 : 공보관 (330-3011, 행정 3011)

규 칙

제681호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6772
제682호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6777
제683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6780
제684호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6781

고 시

제2020-131호	김해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6782
제2020-132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4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6783
제2020-133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 소로3-7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6784
제2020-136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삼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26786
제2020-137호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26790

공 고

제2020-1919호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의견수렴 공고	26798
제2020-2029호	김해도시계획시설(연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27802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03호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으로 재단 지원을 위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함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04호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김해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인”이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김해시 최고명장”(이하 “최고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특정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최고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최고명장 업무담당 국장 및 선정분야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대한민국명장 또는 경상남도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5. 숙련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
 6.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위촉 시부터 차기 최고명장 선정위원 위촉 시까지로 하며, 자동 해촉된다.
- ⑥ 위촉직 위원은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하여 항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최고명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최고명장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구성은 분야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소위원회별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 또는 선정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최고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최고명장의 선정 및 절차) ① 시장은 최고명장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분야 및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선정일 최소 2개월 전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체 또는 관련 협회 및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1명씩 최고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최고명장의 자격요건) 최고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2. 공고일 기준 시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사람
3. 공고일 기준 종사하는 사업장이 시에 있는 사람
4.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
5.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명장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9조(자료 등 제출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및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최고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최고명장 증서 수여
2. 사업장에 최고명장 인증패 부착
3.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제11조(최고명장의 책무) 최고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기능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고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최고명장 승계 및 취소) ① 최고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최고명장에 선정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안이유

- 김해의 숙련기능인이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최고명장 선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최고명장의 선정, 절차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 최고명장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10조)
- 최고명장 승계 및 취소에 관한 사항(제12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05호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착한가격업소"란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4.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란 「김해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한"을 "마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은 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별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퍼센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육성지원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조기극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및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제2조제3호 및 제4호)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원에 대한 제한 완화(제3조제4항)
-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제4조의2)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06호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하여 김해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촉진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김해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제5조제1항)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07호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박람회”를 “박람회, 혼인예식”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예식장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과 그의 직계존·비속의 혼인예식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부대시설 대관료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사 용 료	냉·난방 사용료
대회의장	2시간까지 100,000원 4시간까지 200,000원 전일 사용 300,000원	시간당 10,000원
대연회장	2시간까지 100,000원 4시간까지 200,000원 전일 사용 300,000원 예식대관 2시간 350,000원	
소연회장	2시간까지 30,000원 4시간까지 50,000원 전일 사용 70,000원	
세미나실-1		
세미나실-2		
세미나실-3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 이용시 사용료의 10%를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부과한다. • 그 밖의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 공공형 예식장을 설치·운영하여 시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혼인예식” 사업 추가(제4조)
- 혼인예식 대관료 감경 규정 추가(제6조)
- 혼인예식 대관료 추가(별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08호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같은 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특구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0조의2(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균등분 주민세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중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78조제1항제2호의 그 밖의 법인
2.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3호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제10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률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률”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률
100분의 5 초과 100분의 10 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15 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 초과 100분의 20 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25 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 초과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35 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 초과 100분의 40 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45 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 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각 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간주임대료} =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제11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안이유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 서민생활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감면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동참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하는 부동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5년간 100분의 50 감면(제10조제1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
⇒ 재산세 7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 감면(제10조제2항)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2)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3)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09호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 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신설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제6조)
-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신청 방법,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함(제7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 등을 규정함(제8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0호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심각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여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김해시민은 시장과 교육장이 추진하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 ~ 제3조)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5조)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제6조)
-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제7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1호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 축제 지원사업
2.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3.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
4. 청소년 교류활동 사업
5.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사업
6. 청소년 문화의집 및 전용시설(자유공간) 건립사업
7.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사업
8. 민간수련시설 운영 장려를 위한 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
9. 그 밖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전용시설(자유공간) 등 활동시설을 연차별 또는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지역주민 등 수요자 요구조사
2. 건축물의 설계계획 및 운영계획 등
3. 그 밖에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해시의 청소년활동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권장기준인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청소년활동시설 확충 의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축제 등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화(제4조)
- 청소년활동시설의 연차별 또는 중·장기적 확충에 관한 사항(제5조)
-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한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2호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이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코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 노인일자리 사업 사무의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 사업 참여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제9조)
- 노인일자리 사업 수탁기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11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3호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김해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범위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2.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사업

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5. 그 밖에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 및 해당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기초시설 적용대상 시설

구 분	시 설 명	주 소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김해시 맑은물순환센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김해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7	
폐기물처리시설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835번길 13-72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835번길 13-72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32-68	

◇ 제안이유

-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정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지원사업의 범위(제5조)
- 지원재원의 조달(제6조)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4호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등)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의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1.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2. 20대 미만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3.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의 비고 제6호에 거목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8.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분 이내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6의 비고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노인 주거시설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자의 거주목적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고 김해시가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약 체결로 당해 건축물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차대수 산정 시 세대당 0.3대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종류를 명시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노상주차장에서의 5분 이내 주·정차의 주차요금 면제 및 임신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의 이용자 부대시설 중 편의시설의 종류 규정 신설(제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 신설(제22조의2)
- 임신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규정 신설(별표 1 비고 제6호거목)
- 노상주차장에 5분 이내로 주·정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규정 신설(별표 1 비고 제8호)
- 노인 주거시설 지원 사업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사업자와 매입 약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예외규정 신설(별표 6 비고 제15호)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5호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기업법」”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법”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개량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제19조 중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잉여금 처분 규정의 개정(제15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6호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관한 예방 및 교육
10.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의 예방·확산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8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김해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3.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감염병 비상대책반 설치)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책반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들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 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들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2조(감염병환자들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들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2. 감염병환자들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 13조(정보제공요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들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 15조(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들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시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7조(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3.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4. 시민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김해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제안이유

-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제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비상대책반 설치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환자들의 관리 및 정보제공요청에 관한 사항(제10조 ~ 제13조)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제14조 ~ 제1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7조, 제18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7호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식 조사)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및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웰다잉 문화 조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
- 웰다잉 문화 조성의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8호

김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2.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4.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연구·개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설치)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호스피스·완화疫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완화의료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6조)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제7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제9조,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13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19호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 주는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치료”란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교정·치료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민에게 적용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지원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상담가 교육·양성
3.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위치, 명칭 및 인력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김해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제1조 ~ 제3조)
- 심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
- 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5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6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20호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설”이란 제1조에 따른”을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에서”를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번까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위원은 전임자”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9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및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 중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으로,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김해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널리 알리고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자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한림체력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도록 함(제5조제4항)
- 위원의 연임은 두 번까지만 허용하도록 함(제6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제10조)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제15조)
-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자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19조제3항)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21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간 수도 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감경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 수도요금의 50퍼센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 수도요금의 30퍼센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경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에게 2개월간 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제40조제1항제4호가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제40조제1항제4호나목)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22호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경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에게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제26조제1항제2호가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제26조제1항제2호나목)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1523호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장”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를 “장애인 평생교육 경력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을 삽입한다.

제13조의 제목“(설치)”를“(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업무 수행시 시민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할 수 있다.

제14조제1호부터 제목 외의 부분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교육 관련 단체·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평생교육 상담 및 학습자 관리 지원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7.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8.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공유
9.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10.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만족도 조사
2.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3. 읍·면·동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평생교육 종사자 관리

제20조의 제목“(자원봉사자)”를“(학습매니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을 “운영 및 학습자 관리에 필요한 “학습매니저”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성인문해교육)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 기초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중전의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다양한 계층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학습권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들이 평생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신설 사항(제3조제5항)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6조)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제13조)
- 평생학습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제14조)
-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제20조)
- 성인문해지원에 관한 사항(제22조)

제54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규칙 제681호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분야 및 기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분야 및 각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 세부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
2. 공정개선 등 해당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3. 업무 성과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4.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
5. 해당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제3조(최고명장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김해시 최고명장(이하 “최고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추천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 증명 사진 3점

② 그 밖에 최고명장 선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방법) ① 최고명장은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최종 선정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명장 신청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
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분야별 최고명장 후보자 추천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 및 검토의견 진술 등

제6조(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 연구활동 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최고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선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김해시 최고명장 지정 신청서

성 명	한 글 :		(한자) :		사 진 (3.5cm×4.5cm)
신청 분야		전화번호			
생년월일	(남·여)	해당 분야 근무 기간		년 월	
주 소					
해당 분야 근무 경력	근 무 처		연락처	근무기간	특이사항
	직장명	주 소			
해당 분야 입상 경력	년 월 일	훈 격	수상기관		수상등급(표창)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최고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고명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기술 증명 사진 3점(별지 제5호서식)
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
6. 그 밖에 최고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최고명장 추천서

분 야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 속		종사기간	년 월
국가기술자격			
기능경기 수상경력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추천사유	※ 추천기관에서 작성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김해시 최고명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 (직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남,여)		
(3) 등 록 기 준 지			
(4) 주 소			
(5) 직 업		(6) 소 속	
(7) 직 위		(8) 경 력	
(9) 공적요지(50자 내외)			
.....			
(10) 추천훈격	김해시 최고명장	(11) 추천분야	
조 사 자			
(12) 소 속		(13) 직 위	
(14) 직 급		(15)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6) 년월일	(17) 이 력	(18) 년월일	(19) 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0) 년월일	(21) 내 용	(22) 년월일	(23) 내 용
(24)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 (을)

공 적 사 항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한자)	연 령 (성별)	경 력	수 상 경 력		공 적 요 약
					년 월 일	내 용	

[별지 제4호서식]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현장 실사 시 시연할 숙련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작성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기술 증명 사진 (3점)

작 품 명	
작품설명	
작품사진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김해시 최고명장 증서

분 야 :
성 명 :

귀하는 김해시 숙련기술인의 영예인 김해시 최고명장으로 선정되었기에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김해시 최고명장” 칭호를 부여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

※ 본 증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15%;">제 호</div> <div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 <h2 style="margin: 0;">김해시 최고명장</h2> </div> <div style="width: 15%;"></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분 야 :</p> <p>성 명 :</p> <p>선정연도 :</p> <h3 style="margin: 10px 0;">김 해 시 장</h3> </div>
--

※ 위 인증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신청서 (년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금액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명장 선정	년도	지급구분	차
<p>「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p> <p style="margin-top: 10px;">김해시장 귀하</p> <p>※ 첨부서류 : 사진(3cm×4cm) 1매, 연구 활동 계획서</p>			

[별지 제9호서식]

개인별 연구활동 장려금 지급 대장				사진 (3×4)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선정연도		지급규모		
지급계좌				
지급상황기록				
구 분	년 월 일	지 급 액	확 인	

- ◇ 제안이유
 -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제1조)
 - 최고명장 선정분야 및 기준에 관한 사항(제2조)
 - 최고명장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제5조)
 - 최고명장의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제8조)

제54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규칙 제682호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정사유”를 “변경사유”로, “(경정)”을 “(변경)”으로, “부과취소·경정처분”을 “부과취소·변경처분”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지정 등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재				

부과취소(변경)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변경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변경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세 취소·변경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변경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변경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변경	비고	

※ 부과취소 또는 변경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m²)

김해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	--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김해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별지 제11호서식]

김해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김해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김해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김해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김해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김해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김해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김해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세무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김해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김해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김해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세무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

관인생략

[별지 제12호서식]

김해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내용	인용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 신설(제12조 ~ 제14조)

제54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규칙 제683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5항, 제6항 및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서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경 신청서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현)상시노동자
소 재 지	※ 업체 소재지와 급수전 소재지는 동일하여야 함		
수도현황	수도요금 부과업종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대중탕용	수용가번호 (관리번호)
	※ 위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수용가번호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감경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요금 감경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경 신청서에 기재한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 1에 따라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도요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동의함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 : 동의함 동의안함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 및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경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입증서류 등

◇ 제안이유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예 따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경 신청서”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경 신청서” 신설(제23조제7항)

제54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허성곤

2020년 5월 15일

김해시 규칙 제684호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으로,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을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코로나-19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한 경우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한 경우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2항)

김해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5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유하동 64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사업의 명칭 : 장유배수지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전기공급설비	62,925	· 태양광발전설비 구축 : 7,580㎡ - 발전용량 : 997.92kwp	김해시 고시 제2009-131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 김동숙
 - 주 소 :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4-48, 사회적기업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6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 의 내용	
1	유하동	648-1	수도용지	21,016	6,285	김해시				
2	부곡동	243-1	수도용지	17,984	1,295	김해시				

7.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유
 -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율 향상 및 도시경쟁력 확보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4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5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삼계동 151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4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명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당초 면적(m ²)	변경 면적(m ²)	
대로 1-1-4호선	308	35~38	94.5	3	243	241	경상남도 고시 제1996-227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계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한우
 - 주 소 : 김해시 삼계중앙로 57, 501호(삼계동, 우리빌딩)
5. 사업기간 : 2019. 04. 19. ~ 2021. 04. 1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삼계	1411-4	학	12,118.2	243	경상남도 (교육감)					당초
1	삼계	1411-6	학	241	241	경상남도 (교육감)					변경

7.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유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 비치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 소로3-7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 소로3-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5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무계동 19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호선, 소로3-7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진입도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당초 면적(m ²)	변경 면적(m ²)	
소로 1-1호선	147	10~12	102.7	10	1,031	1,031	최초결정일 1977.11.09
소로 3-7호선	387	8	83.5	0~2	135	13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대표 표성대
 - 주 소 : 김해시 삼문로 25, 201호(대청동, 플러스빌딩)
5. 사업기간 : 2018. 07. 13. ~ 2020. 07. 1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유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순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 고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소로 1-1												
1	김해시 무계동	160	- 27	도	745	105		김해시				
2	김해시 무계동	197	- 17	대	4	4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3	김해시 무계동	199	- 8	답	19	19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4	김해시 무계동	199	- 9	답	100	100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5	김해시 무계동	200	- 5	답	186	186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6	김해시 무계동	201	- 2	답	152	152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7	김해시 무계동	201	- 4	답	21	21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8	김해시 무계동	201	- 10	답	161	161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9	김해시 무계동	201	- 12	도	37	37		김해시				
10	김해시 무계동	201	- 13	종	13	13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11	김해시 무계동	206	- 4	답	220	220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12	김해시 무계동	206	- 5	답	1	1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13	김해시 무계동	200	- 8	답	12	12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소 계					1,671	1,031						
소로 3-7												
14	김해시 무계동	194	- 2	대	41	41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15	김해시 무계동	204	- 2	대	35 29	30 29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16	김해시 무계동	213	- 8	답	16 10	10 10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17	김해시 무계동	213	- 16	답	37	37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18	김해시 무계동	213	- 17	답	17	17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소 계					146 134	135 134						
합 계					1,817 1,805	1,166 1,165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삼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삼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5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구산동 3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삼산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삼산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m ²)	시행면적(m ²)	시행규모	비 고
근린공원	186,666	33,254	녹지조성 (잔디 및 나무 식재)	최초결정일 1986.10.10.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용 도 별
		녹지
면적 (m ²)	33,254	33,25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도시계획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 신청사유
 - 공원시설 보전과 미 조성된 구간 내 시설정비 및 녹지대 조성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5)비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권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구산동	22-1	전	685	685	허*원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19				
2	구산동	23-1	전	745	745	허*한	김해시 구산동 **-1	김해농업 협동조합	김해시 부원동 797	근저당	
3	구산동	23-2	전	151	151	허*한	김해시 구산동 **-1	김해농업 협동조합	김해시 부원동 797	근저당	
4	구산동	24-1	전	672	672	고*오	김해시 삼계로 35, ***동 ****호(삼계동 푸르지오아파트)	김해농업 협동조합	김해시 가락로 62 (부원동)	근저당	
5	구산동	24-2	묘	50	50	고*오	김해시 삼계로 35, ***동 ****호(삼계동 푸르지오아파트)				
6	구산동	24-3	전	6	6	김*학	김해시 진례면 달안리 ***				
7	구산동	25-1	묘	182	182	정*덕	부산시 동구 초량동 ****				
8	구산동	25-2	전	787	655	정*출	김해군 대저면 사덕리 ****-4				
9	구산동	26-1	전	321	21	진*엽	김해시 구산동 **				
10	구산동	26	전	1,375	1,145	진*엽	김해시 구산동 **				
11	구산동	27-2	임	181	181	고*오	김해시 삼계로 35, ***동 ****호(삼계동 푸르지오아파트)	김해농업 협동조합	김해시 가락로 62 (부원동)		
12	구산동	27-5	임	11	11	김*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 괴정자유*차아파트 *-1***	국민건강보 험공단부산 사하지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2층	압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압류	
								박*재	김해시 내동 ****-15	근저당	
13	구산동	57	전	563	563	정*주	김해시 어*동 **9-17 **빌라 *동 *02호	북김해 새마을금고	김해시 해반천로 154 (삼계동)	근저당 지상권	
14	구산동	58-1	전	897	897	정*숙	김해시 구산동*** ****아파트 ***동 **3호				
15	구산동	59-1	전	625	625	이*호	김해시 구산동*** ****아파트 ***동 ***9호	김해농업 협동조합	김해시 가락로 62 (부원동)	근저당	
16	구산동	60	전	595	595	정*주	김해시 어*동 **9-17 **빌라 *동 *02호	북김해 새마을금고	김해시 해반천로 154 (삼계동)	근저당 지상권	
17	구산동	61-1	묘	225	225	정*옥	김해군 김해읍 구산동 **				
18	구산동	65	전	1,058	1,058	허*철	김해시 경원로**, **아파트 *04동 *0*호				
19	구산동	66-1	전	155	155	김*숙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4번길 1*-1*				
20	구산동	66-2	묘	860	860	정*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시장2길9, ***동 ****호				
21	구산동	67-1	전	757	757	허*해	미합중국 ****주 ****로렐힐가 ****				
22	구산동	67-2	전	691	691	유*석	창원시 사파동 *** **아파트 ***동 ***호				
23	구산동	67-3	전	654	654	장*표	김해시 안동 218				
24	구산동	67-4	전	13	13	허*해	미합중국 ****주 ****로렐힐가 ****				
25	구산동	68	전	1,154	1,154	정*애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62, ***동 ****호	김해농업 협동조합	김해시 가락로 62 (부원동)	근저당	
26	구산동	69	전	436	436	허*원	김해군 김해읍 구산동 **				
27	구산동	71	전	536	536	장*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2번길 8, **2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 관계	
28	구산동	72	전	1,210	1,210	심*금	김해군 김해읍 구산동 **				
29	구산동	73	전	1,488	1,488	심*금	김해군 김해읍 구산동 **				
30	구산동	74	전	440	440	정*순	김해시 구지로***번길 **	김해축산업 협동조합	김해시 분성로 308번길 18(서상동)	근저당	
31	구산동	75-1	전	192	192	박*근	김해시 동상동 ****-2				
32	구산동	331	전	221	221	박*욱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5, **4동 **02호				
33	구산동	332	전	43	43	이*동	김해시 가락로356번길 4, ***동 ***호 (구산동, 신우트위스)				
34	구산동	333	전	86	86	박*욱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5, **4동 **02호				
35	구산동	334	답	688	688	박*조	양산시 평산동 *****아파트 **1동 **4호				
36	구산동	335	전	159	159	김*훈	김해시 인제로39번길 **-18, *동 ***호(삼정동, 한솔그린빌)				
37	구산동	336-1	전	783	783	이*호	김해시 구산동 **-2				
38	구산동	336-2	전	26	26	정*영	김해군 김해읍 구산동 **-9				
39	구산동	336-3	전	274	274	박*건	김해시 삼계로 253, ***동 ***호 (삼계동, 화정마을 부영아파트)				
40	구산동	336-4	전	20	20	박*건	김해시 삼계로 253, ***동 ***호 (삼계동, 화정마을 부영아파트)				
41	구산동	336-5	전	1,186	1,186	김*태	울산시 영포동***번지 **동 ***호				공유자
						김*곤	김해시 동상동 ****-6				
42	구산동	336	전	1,306	1,306	김*곤	김해시 부원동 ****-5				공유자
						하*신	김해시 해반천로 ***번길 12-27, ***동 ***호				
43	구산동	337-1	전	1,031	1,031	정*영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동 ****호(화명동, 코오롱하늘채2차 아파트)				
44	구산동	337-2	전	36	36	정*영	김해군 김해읍 구산동 **-9				
45	구산동	337-3	전	66	66	정*영	김해군 김해읍 구산동 **-9				
46	구산동	338	전	337	337	조*욱	김해시 구산동 **-1				공유자
						김*숙	김해시 구산동 **-1				
						김*영	김해시 구산동 **-1				
						김*영	김해시 구산동 **-1				
47	구산동	339	전	302	302	오*민	김해시 삼정동 **-14				
48	구산동	342	전	92	92	김*주	김해군 김해읍 지내동 ***				
49	구산동	산69-8	임	2,250	2,250	김*태	울산시 중구 영포동 ***, **동 ***호				공유자
						김*곤	김해시 부원동 ****-5				
50	구산동	산69-9	임	1,012	1,012	김*태	울산시 중구 영포동 ***, **동 ***호				공유자
						김*곤	김해시 부원동 ****-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 관계	
51	구산동	22-3	전	1,857	54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2	구산동	23-3	전	38	38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3	구산동	23-4	전	90	24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4	구산동	27-1	전	69	69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5	구산동	27-4	전	1,684	343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6	구산동	70	전	770	7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7	구산동	336-6	전	57	57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8	구산동	339-1	전	743	365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59	구산동	340-1	전	530	23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60	구산동	340	전	65	65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61	구산동	산 69-10	임	4,162	1,996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62	구산동	산 69-12	임	616	6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63	구산동	982	구	1,537	1,537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4	구산동	983	구	793	79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	구산동	산 70-4	구	33	3	국토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김해시 고시 제2020-137호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김해시 고시 제2020-128호 (2020.05.01.)로 변경승인·고시된 병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김 해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문(김해시고시 제2020-128호) 참조

- 1) 용도지역(변경없음)
- 2)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3) 지구단위계획(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1) 도로(변경)

○ 총괄표

(단위 : 개, m, m²)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8	2,518	37,643	-	-	-	7	2,359	37,163	1	159	480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5	2,218	35,811	-	-	-	5	2,218	35,811	-	-	-
소로	3	300	1,832	-	-	-	2	141	1,352	1	159	480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태	주 경 과 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3	18	보조간선 도로	114	병동리 산1-3 (대로 1-1-1)	병동리 산1-2 (중로 2-24)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4-207호	하수도6-10 (32m ²) 중복결정
변경	중로	2	23	18	보조간선 도로	114	병동리 산1-3 (대로 1-1-1)	병동리 산1-2 (중로 2-24)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4-207호	-
기정	중로	2	24	15	집산도로	897	병동리909-5	병동리 산217-1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4-207호	
기정	소로	2	78	8	보조간선 도로	114	병동리 9-9 (대로 1-1-1)	병동리 12 (중로 2-24)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4-207호	
기정	중로	2	28	15	집산도로	550	병동리 16 (중로2-24)	병동리 115-68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기정	중로	2	29	15	국지도로	215	병동리 917 (중로 2-30)	병동리 49-1 (중로2-28)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변경	중로	2	29	15	국지도로	217	병동리 917-1 (중로 2-30)	병동리 38-1 (중로2-28)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
기정	중로	2	30	15	국지도로	440	병동리 924-9 (중로2-24)	병동리 116 (중로2-28)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기정	소로	2	86	8	국지도로	27	병동리 48-2 (중로2-28)	병동리 47	일반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기정	소로	3	72	3	특수도로	159	병동리 산217-1 (중로2-24)	병동리 산219-4 (대로 1-1-1)	보행자 전용 도로	-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2-23	중로2-23	• 비고사항 삭제	•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6-10 폐지로 인한 비고사항(중복결정) 삭제
중로2-29	중로2-29	• 노선변경(위치이동)으로 인한 시·종점 위치변경 B=15m, L=215m → B=15m, L=217m	•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노선(위치이동)변경

(2)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20	-	6,120		
기정	6-29	주차장	노외 주차장	한림면 명동리 산219-4번지 일원	1,575	-	1,575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기정	6-30	주차장	노외 주차장	한림면 병동리 119번지 일원	1,500	-	1,500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기정	6-31	주차장	노외 주차장	한림면 병동리 14번지 일원	3,045	-	3,045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3)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360	-	7,360		
기정	6-31	공원	소공원	한림면 병동리 40-1번지 일원	5,860	-	5,860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기정	6-32	공원	소공원	한림면 병동리 115-11번지 일원	1,500	-	1,500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4)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060	-	22,060		
변경	6-39	녹지	완충 녹지	한림면 명동리 산219-5번지 일원	2,170	-	2,170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
변경	6-40	녹지	완충 녹지	한림면 병동리 7-12번지 일원	1,273	-	1,273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
기정	6-41	녹지	완충 녹지	한림면 퇴래리 1175-5번지 일원	5,438	-	5,438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변경	6-42	녹지	완충 녹지	한림면 병동리 913-2번지 일원	3,111	-	3,111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하수도6-11 (98m ²) 중복결정
기정	6-43	녹지	완충 녹지	한림면 병동리 115-37번지 일원	10,068	-	10,068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하수도6-12 (26m ²) 중복결정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6-39	녹지	• 비고사항 삭제	•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6-10 페이지로 인한 비고사항(중복결정) 삭제
6-40	녹지	• 비고사항 삭제	•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6-10 페이지로 인한 비고사항(중복결정) 삭제
6-42	녹지	• 비고사항(중복결정)면적 변경 당초) 70㎡ → 변경) 98㎡	•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라 비고사항(중복결정) 면적 변경

(5) 저류지(변경)

○ 저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025	증) 1,478	8,503		
기정	6-10	유수지	저류시설	한림면 병동리 910-3번지 일원	7,025	-	7,025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신설	6-12	유수지	저류시설	한림면 병동리 산217-1번지 일원	-	증) 1,478	1,478	-	

○ 저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6-12	유수지	• 저류지 신설 - 면적 : 1,478㎡	•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저류시설 신설

(6) 수질오염방지사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40	-	1,240		
기정	6-9	수질오염 방지사설	오수 처리장	한림면 병동리 914-7번지 일원	1,240	-	1,240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7)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0	-	124		
폐지	6-10	하수도	하수도	한림면 명동리 산219-4번지 일원	224	-	-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완충녹지6-39(84㎡), 6-40(108㎡), 중로2-23(32㎡) 중복결정
변경	6-11	하수도	하수도	한림면 병동리 911-1번지 일원	70	증) 28	98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완충녹지6-42 (98㎡) 중복결정
기정	6-12	하수도	하수도	한림면 병동리 115-19번지 일원	26	-	26	김해시 고시 제2019-139호	완충녹지6-43 (26㎡) 중복결정

○ 하수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6-10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하수도 폐지
6-11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증가 : 당초 70m²→변경 98m² - 선형변경 - 비고사항(중복결정)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해 병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라 하수도 변경 및 비고사항(중복 결정) 면적 변경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 정	계		297,293	-	-	297,293	
	-	1BL	25,975	1	한림면 명동리 산217-1번지 일원	2,725	산업시설용지1
				2	한림면 명동리 산217-1번지 일원	2,760	
				3	한림면 명동리 산219-4번지 일원	13,930	
				4	한림면 명동리 산219-1번지 일원	6,560	
	-	2BL	14,765	1	한림면 병동리 7-3번지 일원	1,730	산업시설용지2
				2	한림면 병동리 1번지 일원	1,900	
				3	한림면 병동리 10-2번지 일원	11,135	
	-	3BL	31,380	1	한림면 병동리 17-10번지 일원	3,555	산업시설용지3
				2	한림면 병동리 13번지 일원	5,095	
				3	한림면 병동리 17-11번지 일원	7,320	
				4	한림면 병동리 31-2번지 일원	7,280	
				5	한림면 병동리 921-2번지 일원	8,130	
	-	4BL	64,010	1	한림면 병동리 43-3번지 일원	15,755	산업시설용지4
				2	한림면 병동리 산2번지 일원	14,195	
				3	한림면 병동리 산1-2번지 일원	10,035	
				4	한림면 명동리 산216-1번지 일원	9,025	
				5	한림면 명동리 산216-2번지 일원	10,390	
				6	한림면 명동리 산217-1번지 일원	4,610	
	-	5BL	29,980	1	한림면 병동리 32번지 일원	29,980	산업시설용지5
-	6BL	20,703	1	한림면 병동리 115-9번지 일원	20,703	산업시설용지6	
-	7BL	6,810	1	한림면 병동리 914-5번지 일원	6,810	산업시설용지7	
-	8BL	16,950	1	한림면 병동리 115-25번지 일원	16,950	산업시설용지8	
-	9BL	5,350	1	한림면 병동리 122-1번지 일원	5,350	산업시설용지9	
-	-	-	81,370	-	-	81,370	도로, 주차장, 저류지, 완충녹지, 오수처리장, 공원, (하수도)

○ 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m ²)	
변경	계		297,293	-	-	297,293	
	-	1BL	24,497	1	한림면 명동리 산217-1번지 일원	3,967	산업시설용지1
				2	한림면 명동리 산217-1번지 일원	4,170	
				3	한림면 명동리 산217-2번지 일원	3,945	
				4	한림면 명동리 산219-4번지 일원	5,855	
				5	한림면 명동리 산219-4번지 일원	1,890	지원시설용지1
				6	한림면 명동리 산219-1번지 일원	1,680	
				7	한림면 병동리 산1-2번지 일원	1,650	
				8	한림면 병동리 산1-2번지 일원	1,340	
	-	2BL	14,765	1	한림면 병동리 7-3번지 일원	1,717	산업시설용지2
				2	한림면 병동리 1번지 일원	1,724	
				3	한림면 병동리 6-8번지 일원	4,607	
				4	한림면 병동리 10-2번지 일원	3,358	
				5	한림면 병동리 11-2번지 일원	3,359	
	-	3BL	31,380	1	한림면 병동리 17-9번지 일원	3,555	산업시설용지3
				2	한림면 병동리 13번지 일원	2,397	
				3	한림면 병동리 17-10번지 일원	2,699	
				4	한림면 병동리 16번지 일원	3,368	
				5	한림면 병동리 27번지 일원	3,950	
				6	한림면 병동리 31-1번지 일원	4,725	
				7	한림면 병동리 31-2번지 일원	3,995	
				8	한림면 병동리 921-2번지 일원	6,691	
	-	4BL	64,010	1	한림면 병동리 43-3번지 일원	16,278	산업시설용지4
				2	한림면 병동리 산2번지 일원	11,705	
				3	한림면 병동리 산1-2번지 일원	1,810	
				4	한림면 명동리 산216-1번지 일원	1,831	
				5	한림면 명동리 산216-1번지 일원	1,827	
				6	한림면 명동리 산215번지 일원	16,935	
				7	한림면 명동리 산216-1번지 일원	1,827	
				8	한림면 명동리 산216-1번지 일원	1,987	
				9	한림면 명동리 산217-1번지 일원	1,706	
				10	한림면 명동리 산217-1번지 일원	1,650	
		11		한림면 명동리 산217-1번지 일원	2,454		
		12		한림면 병동리 산1-2번지 일원	4,000		
-	5BL	23,915	1	한림면 병동리 32번지 일원	10,327	산업시설용지5	
			2	한림면 병동리 920-1번지 일원	2,875		
			3	한림면 병동리 31-5번지 일원	2,265		
			4	한림면 병동리 28-4번지 일원	2,499		
			5	한림면 병동리 31-7번지 일원	3,560		
			6	한림면 병동리 30번지 일원	2,389		
-	6BL	26,690	1	한림면 병동리 51-2번지 일원	20,420	산업시설용지6	
			2	한림면 병동리 915번지 일원	6,270		
-	7BL	6,810	1	한림면 병동리 914-5번지 일원	6,810	산업시설용지7	
-	8BL	16,950	1	한림면 병동리 115-25번지 일원	16,950	산업시설용지8	
-	9BL	5,350	1	한림면 병동리 122-1번지 일원	5,350	산업시설용지9	
-	-	-	82,926	-	-	82,926	도로, 주차장, 저류지, 완충녹지, 우수처리장, 공원, (하수도)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1) 산업시설용지

위 치(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1BL-2 1BL-3	1BL-1 1BL-2 1BL-3 1BL-4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에 한함) 	
		용 도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단, 같은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산업단지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업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3BL-1 3BL-3 3BL-4 3BL-5 3BL-6 3BL-7 3BL-8	2BL-1 2BL-3 2BL-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조 경	· 차폐녹지 식재 확보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경계부에서 3m 확보	
	기 타	· 산업시설용지 조성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내에 발생하는 사면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위 치(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1BL-1 2BL-2 3BL-2 4BL-1 4BL-2 4BL-3 4BL-4 4BL-5 4BL-6 4BL-7 4BL-8 4BL-9 4BL-10 4BL-11 4BL-12 5BL-1 6BL-1 7BL-1	2BL-2 2BL-5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에 한함)
	3BL-2 3BL-3 4BL-1 4BL-2 4BL-3 4BL-4 4BL-5 4BL-6 4BL-7 4BL-8 4BL-9		용도 불허 용도
	4BL-4 4BL-10 4BL-11 4BL-12	건폐율	· 70% 이하
	5BL-1 6BL-1 7BL-1	용적률	· 300% 이하
	5BL-1 5BL-2 5BL-3 5BL-4	높 이	-
	5BL-5 5BL-6	배 치	-
	6BL-1 6BL-2	형 태	-
	7BL-1	색 채	-
		건축선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용지 조성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내에 발생하는 사면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위 치(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8BL-1 9BL-1	8BL-1 9BL-1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단, 같은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산업단지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업체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 70% 이하
				· 300% 이하
				-
				-
		-		
		-		
		· 중로1-8호선과 접하는 산업시설용지 경계부에서 폭 5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산업시설용지 조성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내에 발생하는 사면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2) 지원시설용지

위 치(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1BL-4	1BL-5 1BL-6 1BL-7 1BL-8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취약계층이용시설(유아원 및 탁아소)
				· 60% 이하
				· 200% 이하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 저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2. 관계도서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가능

※ 게재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개발과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도시개발과(☎055-330-6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공고 제2020-1919호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에 따른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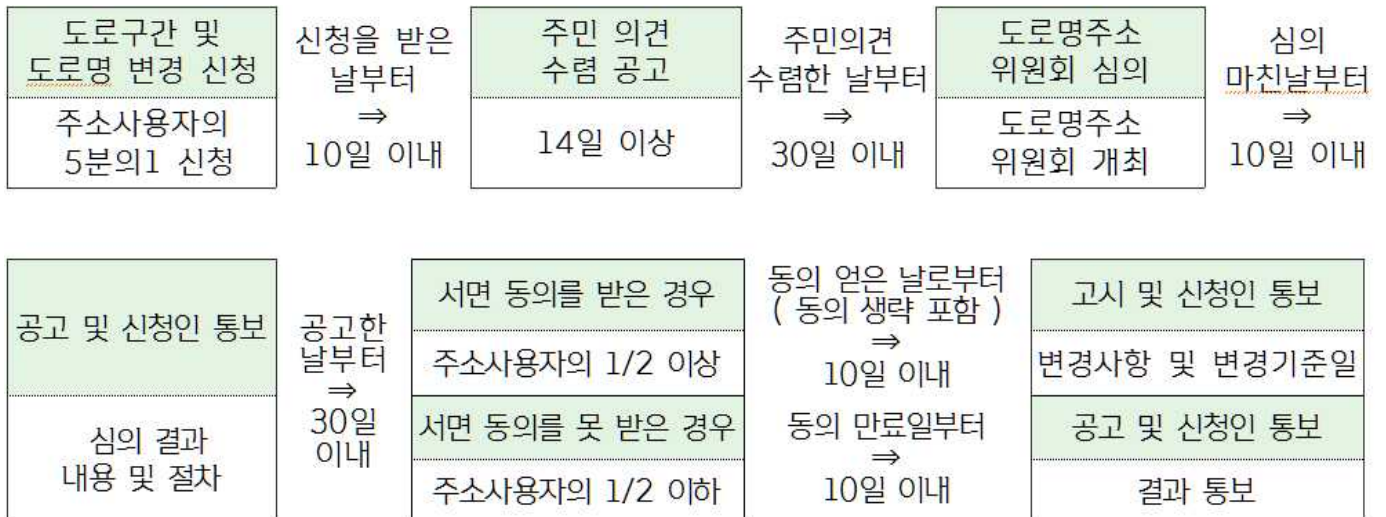
2020년 5월 4일

김해시장

1. 도로명 부여조서 및 현황도(안) : 아래참조
2. 의견제출자 범위 : 김해시민(주소 사용자)
3. 의견제출기간 : 2020. 5. 4. ~ 5. 20.
4. 의견제출처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새주소팀)
5. 의견제출방법 : 전화(☎055-330-2481), 서면제출(김해시 김해대로 2401)
6. 도로명 부여 절차



7. 도로명 변경 절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055-33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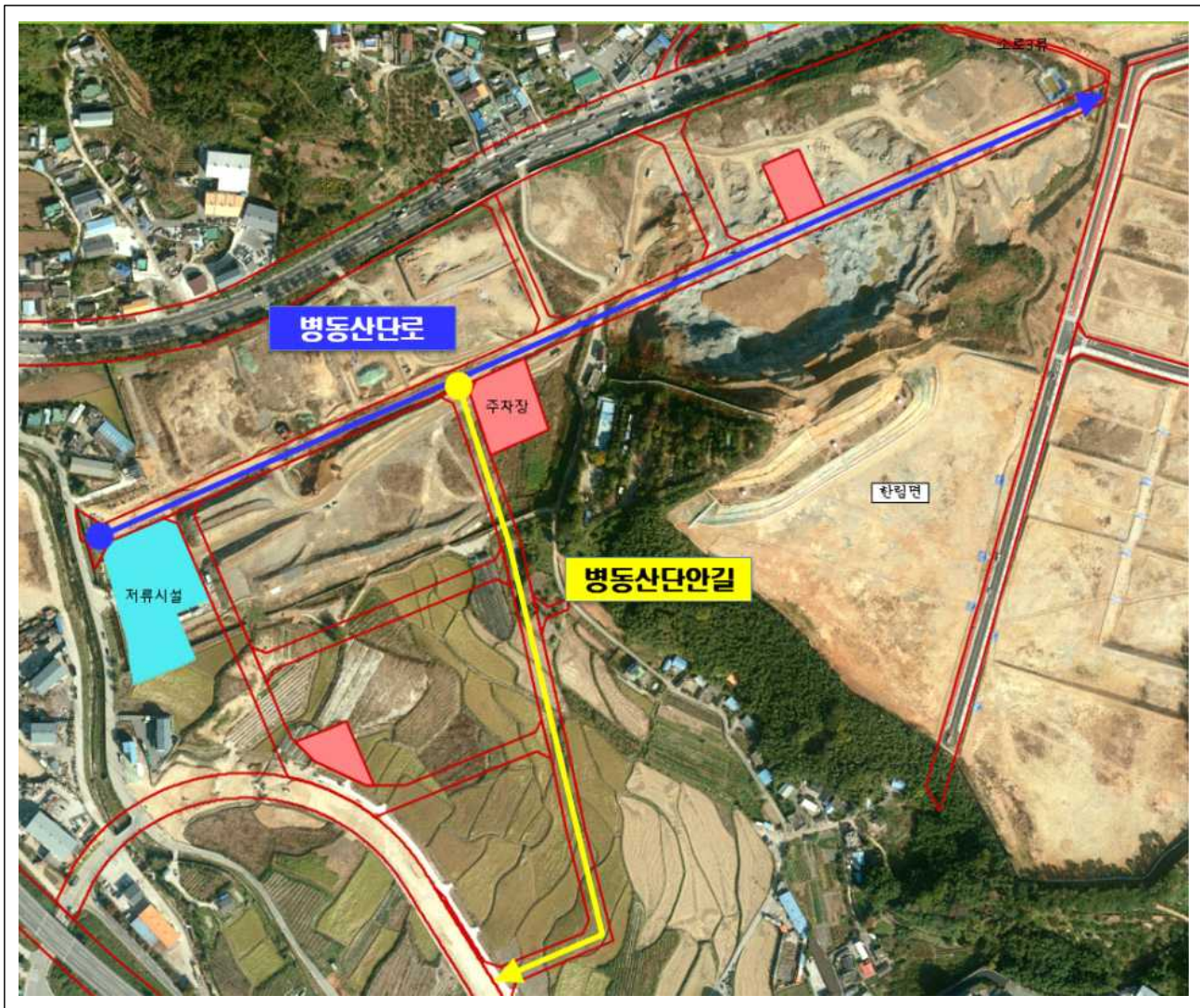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조서 및 도면

도로 위계	도로명 (안)	도로구간		도로 연장 (m)	도로 폭 (m)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중심선	관할 행정 구역	부여 방식
		시작 지점	끝지점							
로	반룡산로	관동동 137-15	관동동 240-6	897	8	20	1→90	도면 참조	장유 3동	고유 명사 방식
		부여사유	관동동 반룡산 아래 신설 도시계획 도로구간으로 "반룡산로"라 명명함							



○ 김해병동일반산업단지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조서 및 도면

일련 번호	도로 위계	도로명 (안)	도로구간		도로 연장 (m)	도로 폭 (m)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중심선	관할 행정 구역	부여 방식
			시작 지점	끝지점							
1	로	병동 산단로	한림면 병동리 911-3	한림면 명동리 산218	902	14	20	1→92	도면 참조	한림 면	고유 명사 방식
			부여사유	김해병동일반산업단지 내 도로구간으로 산업단지 명칭을 이용하여 "병동산단로"로 명명함							
2	길	병동산단 안길	한림면 병동리 16	한림면 병동리 115-68	552	13	20	1→56	도면 참조	한림 면	고유 명사 방식
			부여사유	김해병동일반산업단지 내 도로구간으로 산업단지 명칭을 이용하여 "병동산단안길"로 명명							



○ 도로명주소 변경 조서 및 도면

구분	도로명	도로 위계	도로구간		도로 연장 (m)	도로 폭 (m)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중심 선	관할 행정 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당초	서부로 1637번길	길	주촌면 덕암리 898	주촌면 덕암리 900	424	3	10	1→86	도면 참조	주촌면
변경	옥천길		주촌면 덕암리 898	주촌면 덕암리 900	424	3	20	1→42		
부여사유		위치적 대표성을 가진 “옥천마을”의 “옥천”을 사용하여 “옥천길”로 명명함								

변경 전

변경 후



김해도시계획시설(연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김해도시계획시설(연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안에 대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15일

김 해 시 장

1. 건 명 : 김해도시계획시설(연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2. 입안내용
 - 가.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1)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면적	95,415.50	-	95,415.50	
시설면적	29,562.40	증) 194.99	29,757.39	공원시설율 : 30.98% → 31.19% (증 0.21%) (법적 기준 : 40%이하)
건 축 규 모	바닥면적	2,146.72	증) 1,972.83	기정 건폐율 : 2.25% 변경 건폐율 : 4.32%
	연면적	2,723.86 (3,015.07)	증) 4,167.02 (감) 3,015.07)	기정 용적률 : 2.85% 변경 용적률 : 7.22%

※ () 지하면적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7	연지공원	- 도로 및 광장 : 18,359.20㎡ → 18,213.00㎡ - 편 의 시 설 : 4,352.35㎡ → 4,693.54㎡ - 녹지 및 기타 : 65,853.10㎡ → 65,658.11㎡	- 당초 지하주차장 상부 토심미달로 식재 불가등 활용할 수 없고 주차면수(100대)도 적어 사업효과 창출이 어려워 지상주차장(2층규모, 주차면 193대)으로 조성계획 변경

2)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5,415.50 (3,015.07)	- (감) 3,015.07)	95,415.50 (-)	(지하면적)
도로 및 광장	18,359.20	감) 146.20	18,213.00	
조 경 시 설	2,013.00	-	2,013.00	
유 희 시 설	1,015.00	-	1,015.00	
운 동 시 설	2,073.65	-	2,073.65	
교 양 시 설	1,414.45	-	1,414.45	
편 익 시 설	4,352.35 (3,015.07)	증) 341.19 (감) 3,015.07)	4,693.54 (-)	(지하면적)
공원관리시설	334.75	-	334.75	
녹지 및 기타	65,853.10	감) 194.99	65,658.11	

나. 세부조성계획 변경조서

1) 도로 및 광장(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18,359.20	-	-	-	
변경	소 계			18,213.00	-	-	-	
기정	1	도 로	-	10,869.00	-	-	-	
변경	1	도 로	-	10,303.00	-	-	-	
기정	1-1	진입광장	-	1,124.00	-	-	-	
기정	1-2	광 장	-	827.40	-	-	-	
변경	1-2	광 장	-	1,247.20	-	-	-	
기정	1-3	광 장	-	1,605.30	-	-	-	
기정	1-4	진입광장	-	645.50	-	-	-	
기정	1-5	중심광장	-	2,421.00	-	-	-	
기정	1-6	진입광장	-	867.00	-	-	-	

2) 조정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2,013.00	-	-	-	
기정	2-1	수변휴게소	-	133.00	-	-	-	
기정	2-2	수변휴게소	-	264.00	-	-	-	
기정	2-3	수변휴게소	-	147.00	-	-	-	
기정	2-4	수변휴게소	-	189.00	-	-	-	
기정	2-5	친수공간	-	1,280.00	-	-	-	

3) 유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1,015.00	-	-	-	
기정	6	어린이놀이터	-	598.00	-	-	-	
기정	6-1	어린이놀이터	-	417.00	-	-	-	

4) 운동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2,073.65	1,619.45	2,196.59	-	
기정	3-2	다목적운동장	-	454.20	-	-	-	
기정	3-3	학생체육관	-	1,619.45	1,619.45	2,196.59	-	

5) 교양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1,414.45	-	-	-	
기정	5	야외무대	-	711.60	-	-	-	
기정	5-1	야외전시장	-	565.00	-	-	-	
기정	5-2	야외전시장	-	55.00	-	-	-	
기정	5-3	야외전시장	-	56.00	-	-	-	
기정	5-4	평화의 소녀상	-	10.85	-	-	-	
기정	9	파리장서 독립운동기념비	-	16.00	-	-	-	

6) 편익시설(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4,352.35	416.27	416.27 (3,015.07)	-	(지하면적)
변경	소 계			4,693.54	2,389.10	4,583.29	-	
기정	4-1	화장실	-	60.00	53.38	53.38	-	
기정	4-2	화장실	-	60.00	53.38	53.38	-	
기정	4-3	주차장	-	668.00	-	-	-	
기정	4-4	주차장	-	1,623.60	-	-	-	
변경	4-4	주차장	-	2,194.19	2,194.19	4,388.38	지상2층	
폐지	4-5	주차장	-	487.60	173.88	173.88 (3,015.07)	지하1층	(지하면적)
신설	4-6	주차장	-	366.20	-	-	-	
기정	4-7	주차장	-	455.00	-	-	-	
기정	4-8	전망테크	-	191.00	-	-	-	
기정	4-9	전망테크	-	479.00	-	-	-	
기정	4-10	전망테크	-	132.00	-	-	-	
기정	4-11	화장실	-	88.15	88.15	88.15	-	
폐지	4-12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	61.80	23.71	23.71	-	
폐지	4-13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	46.20	23.77	23.77	-	

7) 공원관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334.75	111.00	111.00	-	
기정	7-1	음악분수 조정실	-	142.00	78.00	78.00	-	
기정	7-2	전기시설	-	55.00	-	-	-	
기정	7-3	관리사무소	-	137.75	33.00	33.00	-	

8) 녹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소 계			65,853.10	-	-	-	
변경	소 계			65,658.11	-	-	-	
기정	8	녹 지	전지역	65,853.10	-	-	-	
변경	8	녹 지	전지역	65,658.11	-	-	-	

다. 도로조서 총괄표(변경)

구 분		합 계		중 로		소 로		세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 계	기정	3,084.0	10,869.0	-	-	3,084.0	10,869.0	-	-
	변경	2,936.0	10,303.0	-	-	2,936.0	10,303.0	-	-
소로	1류	기정	-	-	-	-	-	-	-
	2류	기정	5.0	45.0	-	-	5.0	45.0	-
	3류	기정	3,079.0	10,824.0	-	-	3,079.0	10,824.0	-
		변경	2,931.0	10,258.0	-	-	2,931.0	10,258.0	-

라. 세부도로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사용 형태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	3,084.0	10,869.0	-	-	
변경	합 계				-	2,936.0	10,303.0	-	-	
기정	소로	2	진 2	9.0	진입로	5.0	45.0	중1-6	광장1-3	
기정	소로	3	진 3	4.0	진입로	4.0	16.0	중1-6	연 11	
신설	소로	3	진 4	6.0	진입로	5.0	30.0	중1-6	주차장4-6	
신설	소로	3	진 5	7.0	진입로	5.0	35.0	중1-6	연 15	
기정	소로	3	진 6	2.0	진입로	34.0	68.0	중1-6	연 15	
기정	소로	3	진 8	5.0	진입로	5.0	25.0	지구계	연 16	
기정	소로	3	진 9	5.0	진입로	18.0	90.0	연 20	지구계	
폐지	소로	3	진 10	3.0	진입로	34.0	101.0	중1-6	주차장4-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사용 형태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	3,084.0	10,869.0	-	-	
변경	합 계				-	2,936.0	10,303.0	-	-	
폐지	소로	3	진 11	3.0	진입로	56.0	119.0	주차장4-5	연 15	
기정	소로	3	연 1	5.0	연결로	46.0	230.0	광장1-1	연 2	
변경	소로	3	연 1	3.0	연결로	4.0	11.0	광장1-1	주차장4-4	
기정	소로	3	연 2	4.0	연결로	60.0	240.0	광장1-1	광장1-3	
변경	소로	3	연 2	4.0	연결로	33.0	121.0	광장1-1	학생체육관 3-3	
기정	소로	3	연 3	5.0	연결로	313.0	1,565.0	광장1-1	연 16	
기정	소로	3	연 4	4.0	연결로	17.0	68.0	연 3	연 5	
기정	소로	3	연 5	3.0	연결로	346.0	1,038.0	광장1-1	연 16	
기정	소로	3	연 6	4.0	연결로	5.0	20.0	연 8	연 3	
기정	소로	3	연 7	4.0	연결로	13.0	52.0	광장1-3	연 8	
기정	소로	3	연 8	4.0	연결로	83.0	332.0	연 11	광장1-2	
기정	소로	3	연10	2.0	연결로	28.0	56.0	연 11	연 3	
기정	소로	3	연11	3.0	연결로	78.0	244.0	연 30	광장1-3	
변경	소로	3	연11	3.0	연결로	86.0	258.0	연 13	연 9	
신설	소로	3	연12	2.0	연결로	28.0	56.0	연 11	주차장4-6	
기정	소로	3	연13	2.0	연결로	60.0	182.0	다목적 운동장	연 15	
변경	소로	3	연13	2.0	연결로	64.0	128.0	다목적 운동장	연 15	
기정	소로	3	연14	2.0	연결로	13.0	26.0	야외무대	연 3	
기정	소로	3	연15	4.5	연결로	59.0	288.0	연13	진 6	
변경	소로	3	연15	4.5	연결로	58.0	261.0	중1-6	연 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사용 형태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	3,084.0	10,869.0	-	-	
변경	합 계				-	2,936.0	10,303.0	-	-	
기정	소로	3	연16	5.0	연결로	380.0	1,900.0	진입광장 1-6	연 19	
기정	소로	3	연17	3.0	연결로	242.0	726.0	연 5	광장1-5	
기정	소로	3	연18	3.0	연결로	15.0	45.0	연 17	연 16	
기정	소로	3	연19	5.0	연결로	33.0	165.0	광장1-5	광장1-4	
기정	소로	3	연20	5.0	연결로	262.0	1,310.0	광장1-1	연 19	
기정	소로	3	연21	3.0	연결로	21.0	63.0	연 22	연 20	
기정	소로	3	연22	3.0	연결로	142.0	426.0	광장 1-5	연 20	
기정	소로	3	연23	3.0	연결로	12.0	36.0	연 5	연 24	
기정	소로	3	연24	2.0	연결로	189.0	378.0	연 25	전망테크	
기정	소로	3	연25	2.0	연결로	11.0	22.0	수변휴게소	연 24	
기정	소로	3	연26	2.5	연결로	13.0	33.0	수변휴게소	전망테크	
기정	소로	3	연27	2.0	연결로	210.0	420.0	광장1-5	연 26	
기정	소로	3	연28	2.0	연결로	233.0	466.0	광장1-5	수변휴게소	
기정	소로	3	연29	2.0	연결로	6.0	12.0	수변휴게소	연 28	
폐지	소로	3	연30	2.0	연결로	18.0	42.0	연 11	연 13	
폐지	소로	3	연31	3.0	연결로	7.0	14.0	연 13	연 3	
폐지	소로	3	연32	3~5.0	연결로	13.0	41.0	연 13	연 3	

3. 열람기간 : 공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